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5

발의연월일: 2020. 6. 17.

발 의 자: 태영호・金炳旭・권성동

권명호 · 김기현 · 곽상도

김희곤 · 조경태 · 김정재

이종배 · 허은아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하고,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80억원)을 공제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은 납부세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납세자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본질적인 내용이므로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한편, 주택에 대한 공제금액의 경우 그동안의 물가상승 및 주택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동결되어 있어 납세자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등에 곱하는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

금액을 9억원(1세대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조세부담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및 제13조).

법률 제 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6억원"을 "9억원"으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각각 "100분의 9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표준에 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제8조(과세표준)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	
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	
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	
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	
주택자(이하"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	
액]에서 <u>6억원</u> 을 공제한 금액	<u>9억원</u>
에 <u>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u>	<u>100분의 90</u>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	
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	
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	
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	제13조(과세표준) ①
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	
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	
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	
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u>부동산</u>	<u>100</u>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분의 90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	
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	,
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u>비율</u>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2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	
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	
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	<u>100</u> 분의 <u>90</u>
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	
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공정시장가액비율</u> 을 곱한 금액	
으로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